



추락사고 예방 프로그램(FPP) 실시 안내

목적

소규모 사망사고의 약 60%가 추락(떨어짐) 재해이며 대부분 비계 및 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추락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사업주가 작성한 추락방지계획(FPPS: Fall Protection Program Sheet)을 준수토록 추락사고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

사업대상

추락(떨어짐)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공사 현장

일정통보

현장 방문전 현장방문 일정 및 FPP개요를 문서로 통보



세부 사업 추진 절차

- 1) 지자체, 세움터, kicon 등을 통한 신규 착공 현장 파악
- 2) 공단(위탁)직원이 착공단계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프로그램 안내 및 보급 등 작성·이행 방법 컨설팅
※ 현장소장, 협력업체 소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추락위험 장소, 안전조치 시기 및 주체, 확인에 대해 컨설팅 실시
- 3) 공단(위탁)직원이 수행한 추락사고 예방 프로그램 컨설팅 현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주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
- 4) 추락재해예방프로그램 미이행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실시

사업추진 흐름도



공단(위탁)컨설턴트

○ FPPS의 ①~⑦에 대한 작성·이행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

- 사업주 역할: ④~⑦은 사업주가 추락위험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내용을 작성
- 작성 시기: 순회점검(2일에 1회 이상)시 FPPS 작성(④~⑦)
- 컨설팅 내용: 사업주는 ②의 개구부, 경사지붕, 외부비계 등 추락위험 장소에 대하여 ④~⑦를 참고, 주요위험 요인에 대하여 점검·조치·교육

○ FPPS의 ①~③은 현장소장과 함께 공단(위탁)직원이 작성한 후 1부는 현장에 배부하고 1부는 공단(위탁)직원이 복명용으로 사용

- 현장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2일 이내 FPPS를 작성하여 제출요구
- ※ ③ 평면도 및 단면도는 수기로 작성: 설치 위치는 추가 가능

○ 모니터링: FPPS의 ①~③을 지킴이(공단위탁담당자)에게 전달하여 추락위험 시기별로 지킴이가 현장을 방문하여 FPP이행 유무를 확인

○ 모니터링 결과

- FPP 미이행 현장: 지킴이가 2차 현장 방문하여 FPP이행 여부를 확인
- FPP 미이행 반복 현장: 2차 방문시에도 미 이행 할 경우 고용부 감독요청

사 업 주

○ FPPS의 ①~③은 공단(위탁)직원과 함께 작성하고 1부는 현장보관, 1부는 공단(위탁)직원 배부

- 현장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2일 이내 FPPS를 작성하여 제출
- ※ ③ 평면도 및 단면도는 수기로 작성: 설치 위치는 추가 가능

○ FPPS의 ①~③을 참고하여 추락위험시기별로 ④~⑦을 점검을 하고 내용 작성

- 작성 시기: 순회점검(2일에 1회 이상)시 FPPS 작성
- 사업주 역할: ②의 개구부, 경사지붕, 외부비계 등 추락위험장소에 대하여 ④~⑦를 참고, 주요위험요인에 대하여 점검·조치·교육 이행

안전보건지킴이

○ 추락위험시기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FPP 이행유무 확인

○ FPPS의 ④~⑦에 대하여 사업주가 추락위험시기별로 점검·조치·교육 이행유무 확인

- (사업주 이행시) ④~⑦을 복사하여 지킴이 활동보고서(안전순찰용)에 첨부하여 복명하고 공단직원에게 제출
- (사업주 미 이행시) 2차 현장 방문안내 및 2차 방문시에도 미 이행 할 경우 위험요인을 활동보고서(안전순찰용)에 기재 후 고용부 감독요청